

○아직도 안전성 확보가 문제되는 건설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물이거나 재료 등의 성능저하 현상 등이 내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을 통한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수체제로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실시주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교량의 경우 정밀점검을 “매년 1회이상”에서 “2년에 1회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예견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규정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주기는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2호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6월이내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조항을 폐지한 것임.

□종합의견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내용대로 개정하려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실시주기 완화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기관의 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 이상”을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정기점검 : 2년에 1회 이상(교량은 매년1회 이상)”을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긴급점검 : 순찰 또는 일상 점검등”을 “긴급점검 :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